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7

제출년월일 : 2000. 11.

제출자 : 평창군수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생활보호법폐지로 동조례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변경

주요골자

- 동조례 제2조②의1호 및 2호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변경.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관계부처 승인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1호 및 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 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②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 : <u>생활보호대상자</u> 및 의료부조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중·고등학교 학생</p> <p>2.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 : <u>생활보호대상자</u> 및 의료부조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교장, 학장, 총장이 추천 한 자</p>	<p>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p> <p>-----</p> <p>-----</p> <p>1.----- : <u>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u></p> <p>-----</p> <p>-----</p> <p>2.----- : <u>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u></p> <p>-----</p> <p>-----</p> <p>-----</p>

【 관계법령 발췌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업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5세이상의 노쇠자 2. 18세미만의 아동 3. 임산부 4. 질병, 사고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6.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및 생활보호법의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生活保護法은 이를 폐지한다.